

[거창군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5. 11. 21.
- 나. 발 의 자 : 이수정의원 외 의원 8명
- 다. 회부일자 : 2005. 11. 21.
- 라. 상정일자 : 2005. 12. 6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- 마. 의안번호 : 제2005 - 83호

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- 우리 군에서는 자연마을 단위로 정부지원 또는 주민자력으로 마을회관이나 쉼터 등의 공동이용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관리나 보수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경로당·보일러 등 시설이 낡아 교체 또는 보수를 해야 할 경우 적기에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를 적용받을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를 마을회관, 경로당등 구체적으로 정함(안 제2조).
-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의 관리책임은 이장으로 함(안 제3조).
- 군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지도감독과 유지보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4조).

-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- 대상자 선정은 3월말까지 확정하여 통보하도록 함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지원대상은 마을회관등 대부분의 공동이용 시설물에 대해 폭넓게 적용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시설물 관리책임을 이장에게 두어 소홀해지기 쉬운 공동 이용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,
- 군수가 유지·보수비를 지원하고, 지도·감독 할 수 있게 정한 것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지원은 소규모 사업(천만원)을 대상으로 하고 매년 3월까지 선정하고, 사업 완료 후 지급토록 하였으며, 보조금의 관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등 타 보조금과 형평성을 갖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동 조례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 결과 : “원안 가결”

8. 소수의견 요지 : “생략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생략”